중국, 녹색식품의 성장과정과 발전전략

1. 녹색식품의 개념 및 특징

1.1. 개념 및 표시

녹색식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으로 특정 생산방식에 의해 생산과 전문기관의 인증을 거쳐, 녹색식품 표시의 사용을 허가받은 안전한 식품을 말한다. 환경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보통 '녹색'으로 지칭되기에 중국에서는 이러한 식품들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녹색식품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생산방식'이란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녹색식품 기준에 따라 화학합성 농약, 비료, 첨가제 등의 생산자재 및 기타 인체와 생태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전체 생산과정에서 품질을 조정 관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녹색식품 업무운영 방식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녹색식품 품질기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녹색식품으로 인증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첫째, 제품과 제품원료의 산지가 녹색식품의 생태적 환경에 적합한 품질표준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토지에서 식탁까지 전체적인 품질의 관리를 실행하고, 셋째는 제품에 대해 법의 기준에 따라 통일적인 표시와 관리를 엄격히 적용하

고 있다.

또한 녹색식품의 표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부분은 태양, 아랫부분 풀잎, 가운데 부분은 꽃잎을 상징하며 전체적으로는 자연생태계를 상징하고 있고, 전체 색깔은 녹색으로 생명, 농업, 환경보호를 상징하고, 도형은 사각형으로 환경보호를 의미한다.

그림 1 중국 녹색식품 표시

1996년부터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中國綠色食品發展中心)는 전국의 지리와 기후조건의 차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중국 7대 지역의 72개 항목에 대한 생산규정(농산물 재배,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수산양식 및 식품가공 등의 분야)을 제정하도록 하였고, 해당기준에 대한 심사문건을 완성하여 녹색식품을 AA급과 A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A급은 생태환경의 규정에 맞는 원산지 제품을 말하며, AA급은 유기식품과 동급이며 A급보다 규정과 검사 항목이 더욱 강화된 제품을 말한다. AA급 녹색식품 표시와 글자체는 녹색이고 바탕색은 흰색이며, A급 녹색식품 마크와 글자체는 백색, 바탕색은 녹색이다. 그리고 녹색식품 표지에는 '綠色食品', 'Green Food'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다.

1.2. 특징과 조직

중국 녹색식품의 조직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이 총괄하고, 각 성(省)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여 지역별로 녹색식품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 및 집행하고 있다. 녹색식품을 담당하는 조직을 흑룡강성의 사례로 표시한 것으로 각 성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의 위임을 받아서 하부 행정단위로 업무지도를 행하고, 성 단위에서는 직접 기업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표지과는 녹색식품의 제품인증, 표지관리, 녹색식품의 표준과 기술의 자문, 녹색식품 시장의 감독과 관리, 환경검사 및 제품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종합과는 녹색식품의 종합적인 연구, 계획, 통계, 홍보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2 중국 녹색식품의 조직(흑룡강성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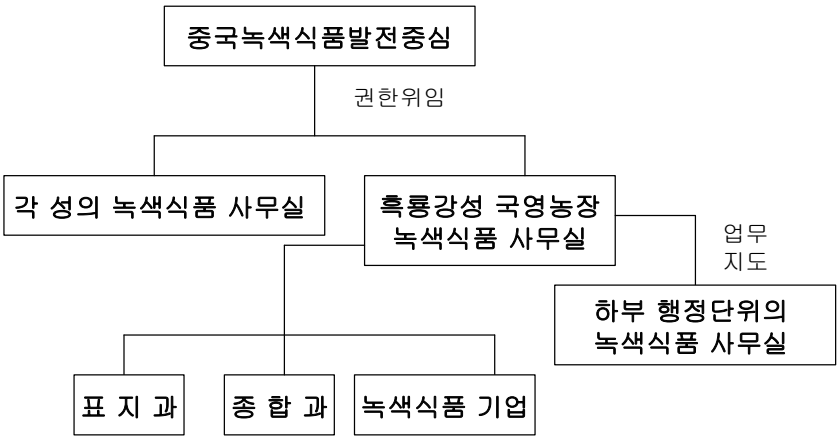

자료: 서종혁 외, 「동북아지역 농업협력 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2. 녹색식품 품질기준의 특징 및 제정원칙[1]

2.1. 녹색식품 품질기준의 특징

2.1.1. 등급별로 적용

중국농업은 산업발전 과정 속에서 농산물의 수량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증가와 경작지 감소 및 생태환경 악화의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농업이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대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녹색식품의 세부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녹색식품 생산기업간의 생산기술, 관리, 환경조건(입지조건)의 차이와 국내외시장의 녹색식품 품질에 대한 요구가 상이함에 근거하여 정책·기술수준·경제성·적용가능성 및 조화와 통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AA등급과 A등급으로 녹색식품기준의 기술등급을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AA등급 녹색식품 기준은 생산지의 환경조건이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기술조건(綠色食品産地環境技術條件)'에 부합하고, 최종생산품의 품질을 등급기준에 맞추도록 요구된다. A등급은 생산지의 환경조건이 '녹색식품 생산지환경기술조건'에 부합하며 생산과정은 관련 녹색식품 생산자재사용 준칙과 생산운영규정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고 생물학 기술과 물리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최종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기준에 맞도록 요구된다.

---

1) 郭春敏, "녹색식품 품질기준의 특징 및 제정원칙"을 참고함.

2.1.2. 전체 생산과정의 품질관리에 중점

녹색식품 기준체계는 생산지 환경기술조건, 생산과정 기술기준, 생산품 품질기준, 포장・상표・저장・운송기준의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며, 또한 농약, 비료, 동물의약(獸藥)품, 첨가제의 사용준칙 등 11가지 통용기준과 일부 생산품기준과 생산기술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녹색식품은 생산과 생산품원료 생산지는 반드시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기준인 '녹색식품생산지환경기술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농작물 재배, 가축 및 가금류 사육과 식품 가공은 반드시 녹색식품의 생산기술 기준인 '녹색식품생산관리규정(綠色食品生産管理規定)'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산지와 생산기술에 부합된 생산품은 녹색식품 생산품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생산품의 포장, 저장, 상표는 반드시 녹색식품의 포장, 저장, 상표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녹색식품 기준은 전체 생산과정의 품질관리가 확연히 드러나며 녹색식품의 생산, 관리 및 인증에 있어서 '논밭에서 식탁까지'의 전체 과정의 품질관리와 행위규범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3.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예방관리시스템 중심으로 진행

현재 중국이 실시하는 녹색식품 품질관리 기준은 UN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식품안전위원회가 비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방법과 유사하다.

이 방법은 식품의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인 유해성을 방지하는 관리도구로서 체계적, 제약적, 합리적으로 응용 가능한 예방차원의 품질보증 방법이지 사후적인 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 녹색식품에 적용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은 식품안전에 대한 유해함을 최대한 줄이고 식품안전성 평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2. 녹색식품 기준의 제정원칙 및 제도

중국 정부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al Movements)의 유기농업 생산가공 표준과 유럽연합의 유기농업 기준, 코덱스(Codex)의 유기생산 표준을 참고하여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표준, 비료, 농약, 수의약, 수산양식용 약품, 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 등 생산자재 사용의 표준과 72종의 농작물 녹색식품 생산기술규정, 녹색식품 제품표준, AA등급 녹색식품 인증표준 등을 제정하였다.

중국의 AA등급 녹색식품의 기준제정은 WTO/TBT(기술무역장벽협약) 기준 및 IFOAM의 기준과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따르고, 그리고 지역수준(EU2092/91조례), 국가수준(미국 농무성이 확정한 유기생산품생산법과 일본의 JAC법)과 각 국 인증기구 수준의 기준특징을 고려하여 구체화하고 관리 가능하게 한 기준이다.

농업생태의 특징과 녹색식품 생산의 생태환경에 대한 요구에 따라 현행 국가 환경보호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녹색식품생산지환경기술조건' 초안이 1995년에 시행된 이래로 5년 동안 생산지 2,800곳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항목별 비교·분석하고 검증한 후, 2000년도에 농업부업종기준으로 선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보증기준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서 '녹색식품생산지환경품질현황평가기술지도규칙(綠色食品産地環境質量現狀評價技術導則)'을 동시에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녹색식품 생산과정의 관리는 녹색식품 품질관리의 중요부분이자 녹색식품 품질기준체계의 핵심으로 녹색식품 생산자재(농약, 비료, 사료와 사료첨가제, 식품첨가제, 동물의약(獸藥)품 등을 포함) 사용준칙과 녹색식품 생산기술 관리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녹색식품 품질관리 준칙과 규정에는 사용을 허가하고 제한하는 물질 및

그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횟수, 약품사용중지기간과 사용금지물질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축 및 가금류 생산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녹색식품동물의약사용준칙(綠色食品獸藥使用準則)'은 기형, 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동물의약(獸藥)품과 수면안정제, 중추흥분제 등 8종 신경기능관리 동물의약(獸藥)품, 유전공학관련 동물의약(獸藥)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료 속에 첨가하는 동물의약(獸藥)품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사용하는 치료용 기생충약과 항균제 자료에 대한 검열을 기초로 중국내 구체적인 실천상황을 고려하여 흑룡강(黑龍江) 하츠왕쿠이그룹(哈慈望奎集團), 길림(吉林) 더따그룹(德大集團), 내몽고(內蒙) 싱파그룹(興發集團), 베이징(北京) 화뚜그룹(華都集團)과 뤼지엔그룹(綠健集團), 칭다오(青島) 정따그룹(正大集團), 샹하이(上海) 따쟝그룹(大江集團) 등 가축 및 가금류 사육기업의 동물의약(獸藥)품 사용 상황을 조사하여 부분적으로 사용을 허가한 기생충약과 항균제의 명단을 확정하고, 약품사용 중지기간을 엄격히 규정하여 동물의약(獸藥)품 잔류량의 안전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1996년부터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中國綠色食品發展中心)는 AA등급과 A등급에 대한 요구사항과 전국의 지리와 기후조건의 차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중국 7대 지역의 72개 항목에 대한 생산규정(농산물 재배,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수산양식 및 식품가공 등 분야)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녹색식품 생산품 기준은 최종생산품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자 녹색식품 이미지 구축을 위한 주요기준으로 녹색식품의 생산, 관리 및 품질관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WTO/SPS협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조치에 대해 WTO회원국들은 국제식

품법전위원회(CAC)가 시행하고 추천하는 기준과 준칙 또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자국의 식품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대다수 A등급 녹색식품 생산품 기준은 FAO와 WHO의 CAC에서 제정한 각종 기준과 지침을 참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관련 기준과 해외선진 기준을 기초로 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검사항목과 오염물지표제한은 일반적으로 국가기준보다 엄격하며,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며 일부는 실험적 검증을 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45개 항목의 생산품기준은 농업부업종기준으로 선포되어 실시되고 있고, 녹색식품 쌀 생산의 기준은 쌀의 품질분류와 영양가 및 가공품질지표에 있어서 관련 국제업종기준의 1급 요구를 수용하고 다른 기준은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녹색식품의 특징을 표시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표를 선택할 때 쌀의 품질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항(抗)곰팡이제, 유기인(磷)농약, 유기염기농약, 노랑곰팡이, 중금속 등 오염인자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24개 쌀가공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와 50개 쌀 샘플 검사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과 기타국가 간의 동일 기준을 비교하여 이용하고 있있다. 향후 중국은 상위 생산품(녹색식품채소, 수산물, 양봉상품, 차잎 등)의 품질기준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녹색식품 품질기준확립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포장산업은 비교적 늦게 발전하여 세부적인 법률제도와 법규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과 환경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의 전통적인 포장방식은 환경보호에 불리한 영향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녹색식품 포장제도의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 문제를 고려하고 있고, 생산품 포장은 원료, 제조, 사용, 회수 그리고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보호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요를 포함하는 제도를 연구・제정하려 한다.

이와 같이 녹색식품에 대한 기준과 제도 확립의 궁극적인 핵심은 인증제도와 마크관리제도를 조정하고 완비하여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제도는 주로 '효율 향상, 규범 강화'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효율의 향상을 위해 일부지역의 주요 녹색식품업체가 참여하는 심의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추가인증 신고(續報)상품의 보고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특히 추가인증신고(續報)상품의 환경감독 및 검사업무를 간소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인증제도의 강화를 위해서 가공상품의 원료생산 및 재배업의 생산관리규정에 더욱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품질과 상표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녹색식품상품연차표본검사업무규범(綠色食品産品年度抽檢工作規範)', '녹색식품기업연차검사 및 일시적 관리시행규정(綠色食品企業年度檢査暫行管理辦法)'과 '녹색식품추가인증신고(續報)업무절차의 성실한 집행 및 녹색식품마크사용 규범에 관한 통지(關于認眞執行綠色食品續報工作程序及規範使用綠色食品標志的通知)'의 3가지 중요 규정을 연속해서 발표하였다. 이런한 제도 확립의 가속화는 '농업부 녹색식품마크관리규정(農業部綠色食品標志管理辦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관리업무 체계의 조정으로 새로 증설된 성급(省級)기구는 해남성(海南省), 흑룡강성, 닝포시(寧波市) 및 서장자치구(西藏自治區)의 녹색사무처(綠辦)가 있고, 인민해방군 후방본부에는 군부대 녹색사무처가 설립되었다.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업무추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계획성 있고 집중적으로 전국녹색식품 교육반을 운영하여 '전문교육, 통일된 심사, 자격인증, 취업보장'을 하는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감독 및 검사체계는 '우수항목 선택, 업무위탁, 합리적 배치, 규범조화'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자격조건과 감독 및 검사업무의 수요에 따라 3곳에 감독 및 검사업무 위탁기구를 증설하였다.

녹색식품 기준은 녹색식품 생산 활동과 관련한 기술이고 행위규범으로 녹색식품 기준은 선진 생산기술을 홍보하여 녹색식품의 생산수준을 향상시키는 기술조건이다. 녹색식품기준은 중국의 식품품질을 향상시키고 중국식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며, 생산품 수출을 통한 외화창출을 촉진하는 기술목표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녹색식품 기준의 선포는 기준체계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녹색식품 개발과 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향후 식품품질 안전기준 확립에 대한 모든 요구에 따라서 녹색식품 생산자재 사용준칙 및 기술수요 등의 통용기준과 상위 생산품 품질기준을 중점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여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 생산운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말기까지 관련 기준을 종합하여 국제수준의 녹색식품 기준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식품기준은 중국의 WTO가입 이후 지속 가능한 농산물 및 유기농산물의 공정한 무역을 위해 기술적인 보장의 근거를 제공했고, 중국의 가업(家業) 특히, 생태농업과 같은 지속 가능한 농업은 대외개방 과정에서 중국농업보호 의식을 향상시켰고, 중국농업의 발전능력은 자국의 농민, 농업과 농산물의 보호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3. 녹색식품의 발전과정 및 현황

3.1. 녹색식품 발전과정

중국은 1990년 5월 15일 녹색식품에 대한 정책을 선포하였고, 녹색식품 정책에는 녹색식품의 개념과 생산 및 관리 체계의 구축, 녹색식품 생산 및 관리조직의 설립과 산업화, 시장화, 국제화 추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1990년에서 1993년까지의 기초적 단계에서는 농업부에 녹색식품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전국의 성 단위에 관리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녹색식품 생산과 관련한 제품질량 감독·측정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계열화된 기술표준을 제정하였다.

녹색식품 표지관리법 등 관련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녹색식품 표시에 대한 상표등록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유기농업운동국제연맹 조직에 가입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녹색식품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고 하였는데, 1990년 첫해에 전국의 127개 제품이 녹색식품 상표 사용권을 획득하였고, 1993년에는 신제품이 217개가 새로 증가하였다.

1994년~1996년 사이에는 녹색식품이 중국 전체로 확산되어 발전된 시기로 볼 수 있다. 1995년 263개의 제품이 새로 추가되었고, 1996년에 289개의 녹색식품 제품이 새로 추가되는 등 녹색식품 제품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5년 녹색식품의 경작면적은 1,700만 무(畝, 1무는 약 200평), 1996년에는 3,200만 무로 녹색식품의 경작면적은 빠르게 확대되었다.

1995년 주요 제품 생산량은 210만 톤, 1996년에는 360만 톤으로 녹색식품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녹색식품이 소비자의 일상소비품으로 인식되어 1995년과 비교하여 1996년 식량·식용유 제품 비중이 53.3%로 증가, 음료제품은 20.8%가 증가하였으며, 가금류 알과 유제품은 12.4%로 증가하였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녹색식품이 일반화되고 시장수요가 확대되면서 국제적인 교류에도 참여하게 된다. 녹색식품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여러 지방정부와 부서가 녹색식품 발전을 중시하게 되었고, 소비자들도 녹색식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뉴스매체가 주도하여 녹색식품의 홍보가 활발히 증가하게 되고, 학술적으로도 녹색식품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 녹색식품의 시장수요가 확대된 결과 일부 대형 기업들은 전문적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일부 제품은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녹색식품 표시상표를 일본과 홍콩에 등록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유기농업의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AA급 녹색식품 표준을 제정하였다.

3.2. 녹색식품의 현황

녹색식품으로 등록된 것은 식품류의 대분류(9개)로 구성되어 있고, 비료 등의 녹색식품과 관련한 생산자재들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녹색식품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으로 2002년 전국에는 지역위탁관리기구 41개소, 환경조건감독 및 검사위탁기구 56개소와 상품품질감독 및 검사위탁기구 12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1998년 말까지 전국 녹색식품 제품은 1,018개로 생산량은 840만 톤, 개발면적은 226만ha에 달하였고, 녹색식품 개발이 시작된 1990년과 비교하여 각각 8배, 24배, 56배로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2001년도 녹색식품상품의 숫자는 총 2,400개로 1998년보다 1.4배 증가하였고, 2001년도 녹색식품 생산량은 2,000만 톤으로 1998년의 840만 톤보다 1.4배 증가하였다. 또한, 1998년의 국내판매액은 285억 위엔(元)에서 2001년에는 500억 위엔으로 성장하였고, 생산지 환경감독 및 검사면적도 1998년의 3,385만 무(畝)에서 2001년에는 5,800만 무로 증가하였다.

2002년도에 새로 심사하여 인준한 상품은 614개이고, 현재까지 녹색식품상표마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은 2,791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녹색식품 생산자재의 개발도 가속화되어 2002년까지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사용을 승인하고 추천하는 녹색식품 생산자재는 모두 6가지 종류의 80개 상품에 이르고 있다.

표 3 중국 녹색식품의 현황

구 분		단위	1990년	1998년	2001년
녹색식품 현황	녹색식품 제품수	개	127	1,018	2,400
	녹색식품 생산량	만 톤	35	840	2,000
	생산지 환경감독 및 검사면적	만 무	61.5	3,385	5,800
	국내판매액	억 위엔	-	285	500
	녹색식품 수출액	억 달러	-	0.7	4
	상표마크 효과적 사용 상품수*	개	2,791		
	연생산량 5,000만 위엔 기업수*	개	312		
	승인된 녹색식품 생산자재 수*	종, 개	6, 80		

주: (1) 1무(畝)는 200평임.
(2) *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집계 수치임.
자료: 馬愛國, "전국 녹색식품 업무회의 보고" 자료, 2002, 7의 내용을 재정리.

지난 몇 년 동안 녹색식품의 총생산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동시에 산업구조와 시장점유율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상품구조가 합리화되고 가공상품의 비중이 이미 70%를 넘어섰으며, 1차 상품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개발주체의 능력이 강화되면서 2002년 연생산량이 5,000만 위엔에 달하는 기업은 312개 정도로 녹색식품 생산기업의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장기업은 32곳이고, 국가급(國家級) 농업산업화 경영을 실시하는 151개 핵심기업 중 51개가 차지하고 있다.

녹색식품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성급(省級) 농업산업화 핵심기업도 상당히 많아져 일부 상품은 이미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녹색식품분유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설탕원료(糖料)작물 재배면적은 전국의 10%를 차지하며, 차잎과 음료생산량은 전국의 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 비교우위가 나타나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녹색식품 집중생산지구 즉, 주산단지로 조성되었고, 녹색식품상품 중에서 흑룡강성(黑龍江省)과 강소성(江蘇省)의 녹색식품 쌀은 전체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내

표 4 주요 성의 녹색식품 신규지정 품목(1999년)

지 역	종 류	내 용
흑룡강성	49종	쌀 7종, 신선 콩단백질 주스, 소독신선유, 전지탈지분, 해바리기씨, 당근주스, 토마토 케첩, 진미 오이, 고량주 2종, 옥수수 3종, 두부 2종, 거위를 이용한 식품, 맥아당, 맥아 엑기스, 분유 13종, 소태반 캡슐, 유제품, 우유, 두유, 영양 압맥, 두유 가루, 차, 콩가루, 생수, 밀가루, 가시 새순, 오이 향
길림성	20종	맥주, 오이, 가지, 토마토, 강낭콩, 무, 배추, 피망, 양배추, 시금치, 감자, 대파, 포도, 마늘, 좁쌀, 닭, 달걀, 거위, 옥수수, 쌀
요령성	15종	쌀 3종, 냉동 빙어, 우유 2종, 분유, 오이, 강낭콩, 고구마, 芽苗菜, 옥수수, 풀명자, 토마토, 간장
하북성	11종	대추음료, 각종 포도주 7종, 정제순 땅콩유, 땅콩, 야생 행인유
산동성	31종	수박, 글루코사이드, 땅콩가공 9종, 생수, 영양면, 토마토 2종, 오이, 호박, 후추 2종, 부사 사과, 딸기, 급냉 시금치, 제독 감자, 밀가루 4종, 율무, 포도주 2종, 차
강소성	29종	식초 2종, 찰벼, 자라, 간장에 조린 오리고기 2종, 연뿌리, 초록 쌀, 연뿌리즙, 생수 2종, 맥주, 차 2종, 배, 김, 쌀, 오이 2종, 야채, 무, 고수, 두루미냉이, 소금에 절인 달걀, 쌀 2종, 수박, 쌀가루, 게
절강성	1종	다래

자료: 서종혁 외, 「동북아지역 농업협력 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몽고(內蒙古)와 흑룡강성의 녹색식품 유제품은 전체의 59%를, 호남성(湖南省)과 복건성(福建省)의 녹색식품 차잎은 전체의 50%, 산동성(山東省)·복건성·베이징시(北京市)의 녹색식품 채소는 전체의 7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02년 개발된 녹색식품은 중국농산품 분류에 의해 분류되고 있으며 식량과 식용유, 과일, 채소, 가금알과 유제품, 수산품, 주류, 음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녹색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제품의 분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유명 기업과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최근에는 등장하고 있다.

1999년 주요 성의 녹색식품 신규지정 품목을 보면 대체적인 중국 녹색식품의 구체적인 품목 현황을 짐작할 수 있다. 녹색식품은 주로 가공품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특색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량 생산 지역인 흑룡강성의 경우 쌀과 관련된 녹색식품이 많고, 흑룡강성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녹색식품의 지정이 많고 또한 국가가 지정한 녹색식품 중점지역이기에 이와 관련한 기업과 개발된 제품이 많다.

녹색식품의 수출액은 1997년 7,000만 달러에서 2001년에는 4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녹색식품의 국제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인증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일본의 농림수산성, 미국의 농업부, EU의 농업위원회 등의 인증기구들과 인증협력이 가속화되고 있고, 상호인가(認可) 업무의 진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녹색식품의 기회와 도전

4.1. 녹색식품의 기회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서 녹색식품 발전의 외부환경 즉,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업무의 강화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녹색식품 사업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식품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4.1.1. 각급 정부의 녹색식품 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최근에 농업구조 조정 촉진, 농산물품질안전제도 구축 및 완비, 농산물 품질 및 효율 향상, 농민소득증대 및 농업생태환경보호 등과 관련해서 녹색식품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녹색식품발전은 이미 중국 정부의 중요 정책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녹색식품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현실 상황에 맞는 혁신을 통해 많은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흑룡강성은 '녹색카드로 특색 있는 길을 가자'라는 추진전략과 함께 녹색식품 개발을 흑룡강성의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 임무로 선택하여 농업구조 조정과 농민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녹색식품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였다.

호북성(湖北省)은 생산관리 규정을 실시하여 '기술진보를 통해 녹색식품의 발전을 촉진하자'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산동성은 녹색식품 발전기지 건설을 제도화하고 강화하여 가공업체와 원료상품간의 연계업무를 강화하고 있고, 길림성(吉林省)은 대형 상업유통기업의 녹색식품 마케팅을 지원하여 시장의 확대 및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요령성(遼寧省)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중점지역에 지역생산지 환경 감독 및 검사업무를 실시함으로서 정부 지도와 기업의 녹색식품개발 지원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복건성은 '외자유치와 내부연합, 수출확대' 전략과 수출지향형 녹색식품개발을 촉진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실천하고 있다.

4.1.2. 녹색식품 소비수요의 빠른 증가

중국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은 녹색식품 소비수요 증가의 기본조건으로 최근 3년(1998~2001년) 간은 도시주민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또한 녹색식품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시기였다. 2001년도 도시주민의 분배 가능한 1인당 평균소득은 6,860위엔(元)으로 1998년(5,423위엔)보다 26.5%증가하였다.

도시주민의 녹색식품 소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영양구조를 개선하여 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안전한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녹색식품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4.1.3. WTO 가입과 녹색식품의 비교우위

WTO 가입에 따른 국내 농업피해의 최소화와 수출 확대 등은 중국농산

물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녹색식품이 비교우위를 발휘하는데 있어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녹색식품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녹색식품에 대한 품질기준 우위 확보를 통해서 선진국의 식품품질 안전수준에 도달하는 것과 이분법적 감독 및 검사, 전체과정 통제, 품질인증, 마크관리라는 품질안전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구축에 노력하고, 강력한 핵심 업체와 고품질의 생산품으로 시장개척 능력의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1.4. 녹색식품 고유의 발전촉진 조건

녹색식품은 지난 10여 년 동안 고품질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많은 소비자들의 인식과 인정을 받고 있고 있다. 품질인증과 마크관리를 위주로 하는 제도의 틀이 이미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녹색식품 개발 및 관리업무도 과학화, 제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녹색식품 브랜드에 의존하는 주요 상품과 핵심기업들은 강력한 시장 경쟁력과 시장확대 기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녹색식품 기업의 기지건설과 농가를 포함한 산업단일화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4.2. 녹색식품의 도전

현재 녹색식품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국내 현실과 국제 상황에 부합하면서 발전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녹색식품의 발전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식품 업무를 농업과 농촌경제의 전체업무에 포함시켜 농업구조 조정, 농업 산업화 경영, 농산물 수출 그리고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와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녹색식품과 함께 농업의 발전,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와 농산물 수출확대 등에서 녹색식품의 중요한 역할

을 인식하여 새로운 업무개념의 확립과 녹색식품의 발전에 대한 전망(예측)이 강화되어야 하고, 품질향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건전한 녹색식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녹색식품이 직면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의 업무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의 업무는 여전히 미약하고, 둘째로는 시장조성 업무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품의 신고를 중시(重視)하고 품질과 마크의 감독 및 관리를 경시(輕視)하는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5. 녹색식품의 발전전략

5.1. 녹색식품의 기본적인 발전전략

녹색식품 사업은 지속적이고 빠르게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업무 또한 중요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와 미래의 녹색식품업무는 농업부의 '녹색식품발전촉진에 관한 의견'에 따라 1개의 중심임무와 2개의 주요 실행방향 확립, 5개의 발전전략을 통한 녹색식품 사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5.1.1. 중심임무

1개의 중심임무는 녹색식품 발전을 가속화하고 녹색식품의 제도, 브랜드, 상품의 비교우위를 강화시켜, 녹색식품이 농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의 모범이 되며 농산물수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도적 비교우위는 전체 품질관리를 기초로 한 선진 기준체계와 완비된 인증제도, 엄격한 감독 및 관리제도,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메카니즘의 실

시가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브랜드의 비교우위는 상표의 권위, 공정성,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과 브랜드의 사회적 영향력 및 시장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의 비교우위는 식품생산 가공관리를 위주로 하는 특수한 고품질의 유명상품으로 대표되는 상품구조를 갖는 것이다.

5.1.2. 주요 실행방향

2개의 주요 실행방향 중 하나는 상품개발 촉진과 규모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시장조성과 브랜드가치의 향상이다. 상품개발은 녹색식품 발전의 기초로서 상품개발의 촉진과 규모를 확대해서 증가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고, 녹색식품 자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 단계에서 녹색식품 발전에는 시장의 성장발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그 업무를 강화하여 시장유통과 상품개발이 동시에 조화로이 발전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5.1.3. 5대 발전전략

⑴ 품질향상과 중점확립을 통한 상품개발전략.

품질향상을 위해서 자원과 환경의 비교우위와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선정하고, 유력한 기업을 중점기업으로 선정,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수한 고품질의 유명상품과 정밀가공상품 및 수출상품을 중점상품으로 선정하여 중점지역, 중점기업, 중점상품에 대한 시범개발을 통해 전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⑵ 산업체계 구축을 기초로 한 산업화추진전략.

산업화는 녹색식품 발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상품생산체계, 과학기술지원체계, 시장유통체계, 품질감독 및 검사체계, 관리업무체계, 정보서비스체계의 6가지로, 산업체계 구축의 가속화는 녹색식품 자원요소의 분배를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3) 녹색식품브랜드를 중심으로 기업+기지+농가의 단일화발전전략.

녹색식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여 핵심기업을 주체, 원료기지를 근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단일화된 조직을 구성해서 품질관리와 핵심기업육성에 유리하도록 하며, 이것을 통한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4) 정부가 추진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발전촉진전략.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의 주체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이 시장의 주도위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시장의 주도력이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정부가 추진역할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추진역할은 반드시 시장원칙 준수와 품질기준 유지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고자 노력한다.

(5) 농산물 수출촉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제화 발전전략.

국제시장 개척은 WTO가입 이후 녹색식품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선 농산물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의 선진기준과 품질안전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주요 농산물수출국 시장을 거점으로 하여 국제적인 상호인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녹색식품의 국제화브랜드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5.2. 녹색식품의 향후 추진전략

5.2.1. 업무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업무방향의 명확화.

현재 중국 농업부의 '녹색식품발전촉진에 관한 의견',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전면 추진에 대한 의견과 농업부의 '녹색식품발전촉진에 관한 의견'의 기준하에 새로운 업무위상으로 통일하고 있다.

농업부 산하 당(党)기구의 결정에 따라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중국농산물품질안전인증센터(中國農産品質量安全認證中心)와 유기농산물인증기

구의 수립을 담당하고, 무공해농산물인증과 유기농산물인증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농업부 내부의 요구에 따라 중국농산물 품질안전 인증센터는 2002년 말까지 준비업무를 마치고 2003년에 정식으로 운영될 것이고, 이것은 농업부 산하 기구가 전체적인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에서 출발하여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및 유기농산물의 특정업무와 전체 업무를 조화롭게 통일된 추진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중대전략조치임을 의미한다.

5.2.2. 인증업무의 완비

인증제도의 조정, 완비와 인증업무의 과학성, 공정성 및 권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인증효율을 향상시키며, 인증비용을 줄여 계속해서 인증업무를 정비하고 있으며,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내의 기구조정을 통해 전문인증처(認證處)를 설치하고 인증제도를 최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신청서류의 작성내용을 간결하게 하고, 보고자료 축소, 추가인증 신고(續報)기업이 성(省)급 녹색사무처(綠辦)의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환경감독 및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부분적인 인증심사 및 인준업무와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인증의 1차심사(一審)와 품질 리스크가 낮은 상품에 대한 2차심사(二審)업무의 직책과 권한을 성(省)급 녹색사무처(綠辦)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인증심사 및 인준제도를 완비하기 위해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가 '녹색식품평가심사위원회(綠色食品評審委員會)'를 설치하고 인증심사 및 인준전문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각 성(省)에 녹색식품 전문가 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심사와 각지의 인증검사업무의 과학성, 공정성 및 권위를 강화하고 있고, '녹색식품인증규범(綠色食品認證規範)'을 제정하여 단계별 인증심사 및 인준업무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 노력한다.

5.2.3. 품질과 마크의 감독 및 관리업무의 강화

품질과 마크의 감독 및 관리강화는 녹색식품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상품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녹색식품 인증검사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는 '녹색식품검사원가입등록규정(綠色食品檢査員注冊登記辦法)'과 '녹색식품검사원기술수칙(綠色食品檢査員技術手冊)'을 제정하여 검사원에 대한 종류별·등급별 관리와 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검사원 교육제도와 정기적인 전문기술훈련을 실시하여 검사원의 업무소양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녹색식품 생산과 관련한 해당 기업에 대한 검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기 위해 기업검사업무를 제도화하고,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감독과 지도하에 각지 녹색사무처(綠辦)가 그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상품표본 검사업무는 현 단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감독 및 관리조치의 하나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가 제정한 '녹색식품연차표본검사업무규범(綠色食品年度抽檢工作規範)'을 엄격히 집행하여 품질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표본검사 횟수를 늘리고, 민감한 항목은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녹색식품 원료와 생산자재 사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품질검사 조치를 더욱 철저히 실시함과 동시에 '녹색식품감독 및 검사기구관리규정(綠色食品監測機構管理辦法)'과 관련 관리제도에 의거하여 환경감독 및 검사의 위탁기구와 상품감독 및 검사기구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여 감독 및 검사위탁기구를 점차 늘리고 검사비용 기준을 통일하여 감독 및 검사업무를 제도함과 동시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크허가, 마크사용, 시장질서 등 3가지 분야의 제도화와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마크 사용비 납부규정을 조정하여 운영의 간편함과 제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업무보조금 규정을 조정하여 지방녹색사무처(綠辦)의 직무와 역할에 더욱 유리한 운영메카니즘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품질과 마크의 감독 및 관리업무 강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녹색식품

발전센터는 감독 및 관리직무 기구를 독립시켜 마크관리처를 설치하였고, 각지 녹색사무처(綠辦)도 현지 상황에 맞추어 감독 및 관리업무를 강화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5.2.4. 전면적인 기술기준 체계의 완비.

현행 녹색식품 기술기준체계는 통용기준, 상위 상품품질기준, 생산운영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3개항의 통용기준, 9개항의 상위 상품 품질기준의 초안작성과 심사 및 결정업무 그리고 35개항의 생산운영규정의 완성을 2002년에 달성하였다. 또한, 녹색식품기술기준체계는 종류가 많고 지역적인 특징이 강하며, 업무가 복잡하므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와 각성(省)의 녹색사무처(綠辦)는 반드시 종류별로 분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향후 통용기준과 상위상품품질기준의 제정과 개정업무를 담당하여 이를 농업부에 보고해야 하며, 성(省)급 녹색사무처(綠辦)는 주로 지방의 생산관리규정의 제정과 개정업무를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심사 및 결정에 참여하며, 지방의 관련 부서가 이를 주관하고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녹색식품기준체계의 틀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지만 아직 완비되지 않았으며, 또 일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으므로 기준체계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가 '녹색식품기술표준화위원회(綠色食品標準化技術委員會)'의 설립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기준제정 및 개정에 충분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5.2.5. 녹색식품 시장의 확대.

시장수요 조성은 녹색식품 발전의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업무중에서 미약한 부분이 많아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녹색식품에 대한 시장수요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홍보를 강화하고, 생산업체(공장)와 판매업체(상점)의 연계를 추진하여 판매업체(상업기업)의 녹색식품의 상업적 유통을 촉진하려 한다.

또한,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녹색식품 수출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고, 시장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녹색식품 전자정보 네트워크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녹색식품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고, 녹색식품 관련 제도 및 관리를 강화해서 가짜상품 판매행위를 처벌하고, 녹색식품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5.2.6. 지역배치계획에 대한 지도(指導) 강화

비교우위 농산물의 지역배치 계획업무는 전략적인 농업구조 조정과 농민소득 증대에 중요한 관건이므로 현재 중국 농업부가 추진하는 중점업무의 하나이다.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농업부의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업무의 계획에 따라서 녹색식품 발전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전문기구를 구성하여 녹색식품의 지역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책적, 기술적 그리고 자금상의 지원을 통해 녹색식품의 지역적 비교우위를 더욱 증진시킬 예정이다.

5.2.7. 업무기구의 강화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녹색식품의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 기구를 조정하고, 중요 인사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녹색사무처(綠辦)는 현지의 녹색식품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2002년에 직접 업무위탁을 받은 41개 녹색사무처(綠辦)기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반이 튼튼한 기구, 일반적인 기구 그리고 취약한 기구가 각각 1/3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6. 전망과 시사점

중국에서의 녹색식품은 생태농업, 유기농 등의 개념과 유사하며 추진하는 목표도 동일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생태농업, 유기농과 중국 농정에서 녹색식품 정책이 다른 점은 생태농업, 유기농이 농산물의 생산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녹색식품 정책은 생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도기업의 활동에 의한 가공, 유통, 무역 등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과정에서 농업산업화경영이 녹색식품에서도 중요한 실행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녹색식품 정책은 이러한 농업 환경에서 생태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농산물의 생산 자체를 보다 높은 상품성을 갖춘 가공제품으로 만들어 농가와 농촌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국의 AA등급 녹색식품의 기준제정은 WTO/TBT(기술무역장벽협약) 기준 및 IFOAM의 기준과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따르고, 그리고 지역수준(EU2092/91조례), 국가수준(미국 농무성이 확정한 유기생산품생산법과 일본의 JAC법)과 각 국 인증기구 수준의 기준특징을 고려하여 구체화하고 관리 가능하게 한 기준이다. WTO/SPS협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조치에 대해 WTO회원국들은 국제식품법전위원회(CAC)가 시행하고 추천하는 기준과 준칙 또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자국의 식품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대다수 A등급 녹색식품 생산품 기준은 FAO와 WHO의 CAC에서 제정한 각종 기준과 지침을 참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순수 '유기농업'을 추구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녹색식품은 고생산·고효율이 뚜렷이 나타나고, 경제효율도 재래식 농업보다 상당히 높다. 따라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녹색식품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화 과정의 가속화는 녹색식품 브랜드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시켰고, FAO와 UNESCAP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녹색식품 품

질안전제도 확립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모델, 경험 및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편, 관련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평가에서처럼 녹색식품은 중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의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식품안전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말까지 전국 녹색식품 제품은 1,018개로 생산량은 840만 톤, 개발면적은 226만ha에 달하였고, 녹색식품 개발이 시작된 1990년과 비교하여 각각 8배, 24배, 56배로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2001년도 녹색식품상품의 숫자는 총 2,400개로 1998년보다 1.4배 증가하였고, 2001년도 녹색식품 생산량은 2,000만 톤으로 1998년의 840만 톤보다 1.4배 증가하였다. 또한, 1998년의 국내판매액은 285억 위엔(元)에서 2001년에는 500억 위엔으로 성장하였고, 생산지 환경감독 및 검사면적도 1998년의 3,385만 무(畝)에서 2001년에는 5,800만 무로 증가하였다.

2002년도에 새로 심사하여 인준한 상품은 614개이고, 현재까지 녹색식품상표마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은 2,791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녹색식품 생산자재의 개발도 가속화되어 2002년까지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사용을 승인하고 추천하는 녹색식품 생산자재는 모두 6가지 종류의 80개 상품에 이르고 있다.

녹색식품의 수출은 2001년에 4억 달러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장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토양과 기후조건이 우수한 동부 지역(동북 3성과 산동성, 하북성 등)에서 생산되는 고급 제품들이 주로 일본, 한국 등을 잠재적인 수출 시장으로 여기고 있고 이들 제품들의 질적 수준 제고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녹색식품의 수출 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국의 녹색식품은 중국 농산물에서 확고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고, 특히 이념으로서의 녹색식품이 아닌 소득수단으로서 녹색식품 가공을 위한 생산은 농가로 하여금 생산 유인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중국의 고급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그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의 녹색식품의 성장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협요소의 증가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가격 경쟁력 우위에서 질적인 면에서도 점차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중국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유입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중국에서 녹색식품으로 지정된 농산물 혹은 가공농산물이 우리의 환경 농산물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느냐는 별개이고, 중국의 기준이 국내 소비자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지만, 다만 녹색식품 정책과정에서 수출품 위주로 농산물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자료: 馬愛國, "전국 녹색식품 업무보고회의 자료"(2002. 7) 등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